보건복지부

갑작스런 위기상황!

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세요!



주소득자의 사망, 중한 질병·부상, 가정폭력,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

거주지 시군구청 또는
국번없이 129로 요청

지원 대상
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

지원 기준

- **소득 기준 :**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구분	1인	2인	3인	4인
월/금액	192만원	314만원	401만원	487만원

- **재산 기준 :** 대도시 241백만원, 중소도시 152백만원,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- **금융재산 기준 :**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

구분	1인	2인	3인	4인
금액	856만원	1,019만원	1,135만원	1,249만원

(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합산)

문의 및 지원요청, 지원 대상 신고

-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24시간 국번없이 129)

지원 내용

- **생계 :** 1인 월 78만원, 4인 월 199만원(3개월간)
- **의료 :** 300만원 이내(※ 퇴원 전 요청 필수)
- **기타지원 :** 주거, 시설이용, 교육, 연료비, 전기요금, 해산비, 장제비

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